

부산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가합4252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891,647원 및 그중 2,149,753,674원에 대하여 2024. 4. 5.부터 2024. 4. 18.까지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며, B는 대구 중구 C 일대에서 시행하는 '골목상권의 건물매입을 통한 안심창업공간 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와 B는 2018. 11. 2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서 B에 43억 2,400만 원 한도로 사업비를 융자하는 내용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기금 융자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B는 2018. 11. 29. 원고가 위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의 지위와 별도로 보증기관의 지위에서 B의 위 융자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 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8. 11.경 B는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보증기관의 지위에서 B에 2018. 11. 29. 보증금액을 2,683,494,600원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2019. 2. 20. 보증금액을 211,000,000원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21. 3. 23.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서의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2,894,494,600원과 이자 25,650,040원 합계 2,920,144,6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22. 6. 2.경 B를 상대로 융자금 및 구상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2,920,14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2022. 6. 2. 지급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2차전111855호, 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22. 6. 7. B에 송달되어 2022.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3. 6. 27.경 B 및 피고로부터 770,390,966원을 회수하였다.

바.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3호는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9%(2014. 1. 1. 이후)의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원고는 2024. 4. 5.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303,891,647원 및 대위변제금 2,149,753,674원에 대한 2024.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4. 4. 15. 지급명령을 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24차전111169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4. 4. 24.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갑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기관인 원고가 2021. 3. 23.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원고에게 B의 대여금 채무 중 2,894,494,600원과 위 일자까지의 이자 25,650,040원 합계 2,920,144,6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B 및 피고로부터 770,390,966원을 회수한 사실,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3호는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9%(2014. 1. 1. 이후)의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회수한 돈을 구상채권 원금에 충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 중 B 및 피고로부터 회수하고 남은 나머지 2,149,753,674원(= 2,920,144,640원 - 770,390,9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1.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3.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날인 2024. 4. 4.까지 관련 지급명령에 따른 이율 등을 적용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154,137,973원임이 인정되고, 그다음 날인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24. 4.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4. 18.까지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3,891,647원(= 대위변제금 2,149,753,674원 + 2021. 3. 24.부터 2024. 4.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미회수분 154,137,97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149,753,67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24. 4.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4. 4. 18.까지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연 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남재현, 판사 박정미, 판사 길선미